

II. 가격자유화

- 위험률 및 이율과 관련한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자유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강구되고 있음.
 - 위험률 할증 범위와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, 표준이율도 시장금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가격자유화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개선
 - 그러나 위험률 할증에 대한 사후 정산,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제한 등이 자유화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구

1. 위험률

- 안전할증 확대
 - (내용) 현재 위험률에 30%까지 안전할증률을 부가할 수 있으나, 장래 보험금 예측이 어려운 위험보장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
 - (평가)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·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

2. 이율

■ 예정이율 자율화

- (내용) 보험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 제출
- (평가) 표준이율 및 구두지도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하는 관행을 개선
 - 보험회사별로 차별화된 보험료 산출을 유도하여 건전한 경쟁 촉진 및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기대

■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

- (내용) 공시이율¹⁾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%에서 20%까지 조정범위 확대
 - 금리과당 경쟁으로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20%에서 10%로 축소(2013년 4월)하였으나, 최근에는 경쟁제한 및 리스크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
- (평가) 공시이율의 조정범위 확대로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 촉진 및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 등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강화

■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

- (내용) 표준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산출방식을 시장금리 추이가 반영되도록 변경
 - 표준이율 산출식에서 기준금리(3.5%)를 제거하고 금리구간별 안전계수를 설정하여 현행 산출식에 비해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연동되

1)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

는 구조로 변경

- 시중금리 계산을 위한 금리지표를 다원화하여 안전성 확보
- (현행) $3.5\% + \text{안전계수} \times \text{시중금리}$ → (변경안) 금리구간별 안전계수 \times 시중금리
- 단,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
- (평가)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화와 더불어 표준이율이 불필요하게 예정이율을 제약할 여지를 제거
 -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높은 표준이율 적용 인센티브가 표준이율 인상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
 - 예정이율 자율화가 정착되면 표준이율은 준비금적립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연계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

3. 가격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

■ 위험률차익 정산제도 마련

- (내용) 안전할증률 확대의 효과가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
- (평가) 사후정산은 위험률차 부분배당과 유사하므로 유배당 상품 활성화와 함께 논의할 필요

■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

- (내용) 금리가 하락할 경우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의 영향이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표준(시중)이율 하락시 사업비 인하 등 보험 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
 - 예를 들어 환급률 100%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
- (평가) 보험상품의 보험만기와 납입만기 구조는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

■ 유배당 상품 활성화

- (내용)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된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이익배분률의 변화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
 - 현행 9:1인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화하고 보험회사에 판매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
- (평가) 단종 위기에 있는 유배당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